

의안번호	2206760
의 회 인	이원택 의원
회 답 일	2024. 12. 26.
추계번호	24A6094

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13조제1항제2호 자목 신설 (분산에너지 사용량의 할당 등)	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분산에너지를 활성화하고 에너지공급의 안정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「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 제8조제1항1)에 따른 새만금사업의 시행자에 대하여 해당 사업의 실시 또는 시설의 설치 전에 에너지 사용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분산에너지로 사용하도록 분산에너지 설비 설치계획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음	재량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등 근거 규정
1	안 제13조제1항제2호 자목 신설 (분산에너지 사용량의 할당 등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- 1) 「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
제8조(사업시행자의 지정 등) ① 새만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새만금사업의 시행자를 지정한다.
(후단 생략)
1.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
 2.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공기관
 3.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른 지방공기업
 4. 자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민간투자자
 5. 새만금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으로서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
하나 이상이 출자한 비율의 합이 100분의 50을 넘는 법인
- ③ 공공시행자(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)는 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사업의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.
1. 제1항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
 2. 제1항제3호에 따른 지방공기업
 3. 제1항제4호에 따른 민간투자자
 4. 제1항제5호에 따른 법인
 5. 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에 입주할 자

2. 상세 사유

- 개정안은 에너지사용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분산에너지로 사용하기 위해 해당 설비를 갖추어야 하는 “의무설치자²⁾”의 대상에 새만금사업의 시행자를 추가하는 내용
- 개정안에 따라 새만금사업의 시행자가 에너지사용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분산에너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분산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새만금 사업을 지원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
 - 새만금개발청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새만금청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 중인 새만금사업은 총 5종으로, 각각 군산시, 한국농어촌공사, 새만금개발공사, 새만금관광레저(주), (주)켈린지테마파크가 사업시행자로 지정
 - * [참고자료] 새만금청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 중인 새만금사업 현황
 - 군산시가 추진하는 새만금사업의 경우 분산에너지 설비 설치에 따른 비용을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부담하여야 하므로 지방재정 지출 증가 요인이 됨
 - 그 외 4개 사업의 경우 각 사업시행자가 분산에너지 설비 설치에 따른 비용을 자체적으로 부담할 가능성도 있으나, 현재 새만금 지구에 대하여 국가가 예산 사업으로 전력인프라 구축 비용을 지원 중인 점³⁾을 고려할 때 분산

2) 「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」

제13조(분산에너지 사용량의 할당 등)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분산에너지를 활성화하고 에너지공급의 안정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(이하 “의무설치자”라 한다)에게 해당 사업의 실시 또는 시설의 설치 전에 에너지사용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분산에너지로 사용하도록 분산에너지 설비 설치계획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.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분산에너지 설비 설치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지역(이하 이 조에서 “설치의무지역”이라 한다)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.

1. 「건축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신축 또는 대수선하는 건축물의 소유자
2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
 - 가. 「택지개발촉진법」 제7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
 - 나. 「도시개발법」 제11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
 - 다. 「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」 제10조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
 - 라. 「기업도시개발 특별법」 제10조에 따른 기업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
 - 마. 「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 제26조에 따른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
 - 바. 「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첨단의료복합단지의 관리자
 - 사. 「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혁신도시의 관리자
 - 아.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의 관리자
 - 자. 그 밖에 분산에너지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분산에너지 사용이 필요한 지역, 지구 등의 관리자

3) 새만금 지구 내 전력인프라 구축 비용 지원 사업 현황

에너지 설비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 또한 국비를 투입하여 지원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 경우 국가재정 지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

- 개정안에 따른 재정지출 증가액은 새만금사업 시행자에 대하여 분산에너지 사용이 의무화됨에 따라 신규로 갖추어야 하는 설비의 종류 및 규모, 이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 수준 등에 따라 결정될 것이나, 추계에 필요한 지원 대상 및 범위 등 세부적인 내용을 알 수 없으므로 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할 수 없음
 -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23년 6월 해당 법률이 제정되어 금년 6월 시행됨에 따라 현재 추진 필요한 제도와 사업을 정비하는 과정에 있어 개정안에 따른 재정 투입 계획을 수립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, 현행법에 따라 의무설치자가 분산에너지 설비 설치계획서를 제출한 사례 또한 아직 없다는 입장임
 - 이에 따라 분산에너지 설비 설치와 관련하여 준용 가능한 선행 사례가 없어 신규 추진될 사업의 규모를 예측할 수 없으며, 재량지출성 사업의 특성상 분산에너지 설비 설치를 위한 구체적인 지원 내용 및 범위도 재원 추가 투입 수준에 따라 상이할 수 있어 현 시점에서 이를 합리적으로 가정하여 소요 비용을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
- 이에 분산에너지 설비 의무설치자의 대상에 새만금사업 시행자를 추가하는 경우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, 개정안은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에 해당

-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전력인프라 구축(일반회계, 5557-432):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내 전력수요 증가에 적기 대응하기 위하여 국비를 투입하여 전력공급시설(개폐소, 154kV, 1개) 및 지중 송전선로 건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, 2025년 국비 예산은 65억 4,200만원

- 새만금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단 구축(기후대응기금, 6131-400): 새만금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단(산단 5·6공구)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산단 내 입주기업 에너지데이터(전기·열 등)의 수집·분석·활용을 지원하는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하고 전력계통연계 및 에너지저장장치 구축 등*을 지원하는 사업으로, 2025년 국비 예산은 98억 6,000만원

* 산단 내·외 유희 부지를 활용해 산단 입주기업에 공급할 재생에너지 발전단지를 구축할 예정으로, 이와 관련한 배전망 등 연계와 변동성 보완 설비인 에너지저장장치 등을 구축

Ⅲ. 부대의견

☐ 없음

Ⅳ. 작성자

☐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추계세제총괄과	김효진	권아영

☐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김효진	02-6788-4654	hjkim1991@na.go.kr

[참고자료] 새만금청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 중인 새만금사업 현황

연번	사업명	사업시행자	사업기간	총사업비 (억원)
1	새만금지구 국가산업단지	한국농어촌공사	2008~2030	26,203
2	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조성	새만금개발공사	2019~2024	13,476
3	새만금 신시야미 관광·레저용지 1단계(신시도호텔)	새만금관광레저(주)	2021~2028	881.4
4	군산시 광역 해양레저체험 복합단지 조성	군산시	2019~2024	386.9
5	새만금 켈린지테마파크 개발	(주)켈린지 테마파크	2022~2026	1,443

자료: 새만금개발청